

# 동산·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동산·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동산·채권의 담보등기에 대한 등기사항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도 공시함으로써 동산·채권의 담보등기제도를 활성화하고 거래안전을 보장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등기사항의 개요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인·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기재한 증명서의 종류를 “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”로 변경함(안 제23조제1항제4호)
-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동산·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함(현행 제23조제2항 삭제)
- 집행관에 대한 특별규정을 삭제함(현행 제23조제3항 삭제)
- 등기사항증명서의 증명사항에 해당하는 등기기록에 대하여도 누구

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함(안 제25조제3항)

#### 4. 동산·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#### 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동산·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동산·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법인·상호등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기재한 “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”

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32조의2제1항 중 “등기사항개요증명서”를 각각 “등기기록미개설 증명서”로 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3조(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)</p> <p>①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동산담보등기 및 채권담보등기 별로 다음 각 호로 한다. 다만,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 1호로 한정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제1호의 사항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개요사항 또는 해당 법인·상호등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기재한 “등기사항개요증명서”</u></p> <p>② <u>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한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담보권설정자</u></p> <p>2. <u>담보권자</u></p> <p>3. <u>채무자</u></p> <p>4. <u>담보권설정 후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담보목적물인 채권을 양</u></p>	<p>제23조(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법인·상호등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기재한 “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”</u>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

수한 사람

5. 담보권설정 후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질권이나 그 밖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

6. 담보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

7. 그 밖에 당해 담보등기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

8. 위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의 파산관재인 등 관리처분권을 갖는 사람

③ 집행관은 민사집행규칙 제 132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25조(열람의 방법) ① · ② (생략)

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증명사항에 해당하는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제2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한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.

<삭 제>

제25조(열람의 방법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.

<의안 소관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	
연락처	(02) 3480-1888